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38
------------	-------

발의연월일 : 2019. 4. 16.

발의자 : 신동근 · 김철민 · 이동섭
이상현 · 서형수 · 전재수
김현권 · 민홍철 · 정세균
김영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으며, 전국에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음.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

는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지방문화분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을 “(국가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시책을”을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를 “시·도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둔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분원을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로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제4조의2 중 “지방문화원이 아니면”을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도의 조례로”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를 “시·도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가는”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u>지방문화원의 육성 등</u>) ① (생 략)</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u>다음 각 호의 시책을</u>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1. <u>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u></p> <p>2. <u>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u></p> <p>3. <u>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u></p> <p>4. <u>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u></p> <p>③ (생 략)</p> <p><신 설></p>	<p>제3조(<u>국가 등의 책무</u>)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시책을----- -----.</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u></p>

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 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

	<p><u>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u></p> <p><u>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 ----- <u>시·도지사의</u>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 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⑧ ----- ----- ----- ----- <u>두며, 필요</u> <u>한 경우 그 분원을 둘 수 있다.</u>
<신 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	⑩ -----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u>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u>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u>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시설) ① ----- ----- ----- 시·도의 조례로-----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 ③ (생 략)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u>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시·도에-----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 ② (생 략) ③ <u>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u>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 -----.